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4. 16 홍 이 식 의원의 4인
- 나. 회부일자 : '96. 4. 16
- 다. 상정일자 : '96. 4. 25 (제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양동복
- 나. 제안이유

- . 95. 7. 14 제 34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상임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청원에 관한 사항도 소관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함.

- 다. 주요내용

- . 청원의 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 청원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재 회부 할 시 상임위원장등과 미리 협의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월)

- . 본조례의 개정은 상임위원회 설치이전에는 청원이 있을시 청원 심사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후 각 청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청원심사 특위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음.
- . 청원과 진정이나 민원사항은 완전별개의 사안으로 청원이외의 사안은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칙을 마련하여 준용규정을 정하였음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 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1996. 4. 16

발 의 자 : 홍이식 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 . '94. 7. 6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 . 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5. 7. 14)의결로 3개 상임위 위원회가 설치된바 있어 각종 안건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동규칙의 내용중 일부를 보정키 위함

2. 주요내용

- .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추가 (규칙 제4조)
- . 규칙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원이 불수리 된데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 (규칙 제5조)
- . 청원서가 접수 되었을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6조)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제2호 "국가" 를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 (이의신청)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서 회부의 심사)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제17조 (준용규정) 화순군의회 진정서 처리규칙을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및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4조 (불수리 사항 통지) - (생략) -</p> <p>1. 생략</p> <p>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것</p> <p>3. 4. 생략</p>	<p>제4조 (불수리 사항 통지) (현행과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을 - - -</p> <p>3. 4. 현행과 같음</p>
<p>제5조 (이의신청) ①생략</p> <p>②의장은 제1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미리협의 하여야 한다.</p>	<p>제5조 (이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중략) - - - - -</p> <p>- - -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 --- (중략) ----- .</p>
<p>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 회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p>	<p>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 (이하 "위원장"라 한다.) 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와 화순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p>제17조 (준용규정)</p> <p>- - - (생략) - -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및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을 준용 한다.</p>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4. 16 홍이식 의원 외 4인
- 나. 회 부 일 자 : '96. 4. 16
- 다. 상 정 일 자 : '96. 4. 25 (제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양 동 복
- 나. 제안이유
 - .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진정서등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처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되고 있음.
 - . 이의 처리 절차등을 규정화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키 위함.
- 다. 주요내용
 - . 불수리 : 재판간섭, 국가 또는 행정기관 및 의장, 의원모독, 진정한 불분명, 이중 진정서등
 - . 처 리 : 타기관 이송 5일내
의회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내에
 - . 결과통지 : 의결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
 - . 준용규정 :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월)

- . 진정서 처리규정은 헌법, 국민청원법,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청원(청원심사 규칙)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단순한 주민의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